

	간호학과실습운영규정	규정번호	3-4-1
		제정일자	2015.03.01.
		개정일자	2026.08.01.
		개정차수	10차
		소관부서	간호학과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안산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학칙 시행세칙 제61조에 의거하여 간호학 실습의 효율성을 높이고 실무 현장에서 요구하는 간호사를 양성하기 위한 간호학과 의 실습 전반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습의 정의) 실습이라 함은 임상실습, 실습실실습, 학교현장실습 등으로 구성한다.

제2장 임상실습

제3조(임상실습의 정의) “임상실습”은 병원,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실시하는 성인 간호학실습, 여성건강간호학실습, 아동간호학실습, 정신간호학실습, 지역사회간호학실습, 간호관리학실습, 종합실습 등을 말한다.

제4조(임상실습 학점 및 시수) ① 임상실습 학점은 총 22학점 이상으로 구성하되, 실습 학점 중 6학점 이내에서 시뮬레이션실습 학점을 포함할 수 있다.

② 삭제 <2024.03.01.>

③ 임상실습교과목 학점 당 이수시간은 1:3으로 운영한다. <신설 2023.03.01.>

제5조(출결) ① 조퇴 또는 지각 3회는 결석 1회로 간주한다.

② 지각, 조퇴, 결석은 임상실습 출결평가기준에 따라 감점할 수 있다.

③ 결석은 원칙적으로 금하되 질병, 사고, 취업면접 등으로 인한 결석 시 진단서 및 기타 공인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은 후 보충실습을 할 수 있다. 세부사항은 관련 지침을 따른다.

제6조(학생의 의무) ① 학생은 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학교의 명예를 지킨다.

② 학생은 임상실습 전 결핵을 포함하여 학과에서 요구하는 항체검사 및 예방접종 등을 실시하여 결과를 학과에 보고한다.

③ 학생은 개인정보 보호 서약을 하며, 임상실습기관 및 대상자의 정보를 유출해서는 안 된다.

④ 학생은 실습에 필요한 사전교육을 받고, 실습관련 제반 사항을 준수한다.

⑤ 학생은 간호사의 윤리적 책임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실습에 임하며,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한다.

⑥ 학생은 임상실습지도교원 및 임상실습현장지도자의 지도에 대해 예의를 갖춘다.

제7조(임상실습 평가) ① 임상실습 평가는 각 실습 과목별 학습목표를 반영한 평가기준에 의한다.

② 삭제 <2023.03.01.>

③ 임상실습 교과목의 실습성적 우수자를 매 학기 선정하여 포상 대상자를 결정한다.

제8조(임상실습 배치) ① 실습 단위별 학생인원은 최대 8명 이하로 배치한다.

② 학생은 임상실습에 대한 제반 사항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본인의 질병, 관혼상제(본인 결혼, 부모·형제·배우자·자녀 상), 실습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 실습변경 및 유보가 가능하다.

제9조(임상실습기관 선정 및 운영) 임상실습기관 선정은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의 임상실습기관 선정 기준을 따르되 각 과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실습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① 임상실습기관은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병동, 특화병원 또는 시설, 지역사회기관 중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모든 임상실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체결된 협약서에 의해 실습을 의뢰한다.

③ 임상실습기관의 사정으로 실습부서 및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할 때 본 대학과 협의한다.

④ 임상실습기관은 실습 중 문제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대학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⑤ 임상실습기관이 원거리인 경우 효율적인 실습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임상실습 운영) ① 실습 운영은 학사 및 실습일정에 준한다.

② 임상실습은 학기 내 실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기 중 실습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매 방학기간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방학 중 실습을 할 수 있다.

③ 임상실습은 2주 단위의 블록제로 운영한다. 다만, 주당 실습시간이 부족할 경우 교수회의에서 학사일정에 준하여 실습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④ 감염병의 대유행 및 이에 준하는 상황 등 발생 시 교육부, 한국간호교육평가원 및 대학 등의 관련 지침에 근거하여 임상실습의 운영을 대체할 수 있다. 임상실습운영방안의 대체는 학과교수회의에서 결정하며 세부사항은 학과의 임상실습지침에 따른다.

제11조(임상실습지도자의 기준 및 역할) ① “임상실습지도자”는 전공실습단위의 현장지도를 포함하여 임상실습을 지도하는 자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임상실습지도교원은 대학 소속으로서 전임교원, 산업체경임교원, 강사 등을 말한다.

2. 임상실습현장지도자는 임상실습기관에 소속된 현장실무자로서 본 대학이 위촉한 수간호사, 팀장, UM 등을 말한다.

② 임상실습지도는 전임교수의 책임 하에 임상실습지도교원 및 임상실습현장지도자가 한다.

③ 임상실습지도교원 자격은 석사학위 이상, 임상경력 3년 이상인 자로 한다.

④ 임상실습현장지도자 자격은 임상실습기관에 소속된 자로서 학사학위 이상, 임상경력 3년 이상인 자로 위촉한다.

⑤ 임상실습지도교원은 사전오리엔테이션, 현장순회지도, 집담회 등을 실시하며, 임상실습기관 및 부서와 실습협의회 및 평가회에 참석한다.

⑥ 임상실습현장지도자는 실습교과목 평가기준에 따라 학생을 평가한 결과를 본 대학에 송부하며, 실습 중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즉시 해당 실습교과목 임상실습지도교원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12조(임상실습지도) ① 삭제 <2023.03.01.>

② 삭제 <2023.03.01.>

③ 임상실습지도는 다음 각 호의 유형으로 구분한다.

1. 실습 오리엔테이션 및 실습 평가회 : 실습시작 전·후에 교내에서 실시한다.

2. 순회지도 및 집담회 : 실습 기간 중에 임상실습기관에서 실시한다.

3. 삭제 <2023.03.01.>

4. 그 밖의 임상실습지도는 실습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지도한다.

제13조(임상실습지도 인정시수) [본조삭제 2024.04.01.]

제14조(임상실습안전관리) ① 대학은 매년 실습학생에 대한 보험에 가입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 ② 학과는 안전한 임상실습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지·관리한다.
1. 실습전 학생의 기본적인 검진사항과 예방접종여부 확인 및 관리
 2. 감염병의 대유행 및 이에 준하는 상황 등 발생시 필요한 대책 마련
 3. 안전사고 처리절차 및 비상연락망 체제 수립
 4. 그 밖의 세부사항은 임상실습지침을 따른다.

제3장 실습실실습

제15조(실습실실습 정의) “실습실실습”은 기본간호학실습, 시뮬레이션실습, 자율실습 등을 말한다.

제16조(실습실실습 운영 및 안전교육) ① 실습실실습의 학점 당 시수는 1:2로 한 학기 15주로 운영한다. 다만, 학점으로 개설되지 않은 실습실실습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실습실실습은 실습지도교원 1명당 학생 20명 이하로 배치하여 운영한다.

③ 삭제 <2024.03.01.>

④ 학생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해당과목의 안전한 실습을 위하여 안전수칙 등을 준수해야 한다.

⑤ 감염병의 대유행 및 이에 준하는 상황 등 발생 시 교육부, 한국간호교육평가원 및 대학 등의 관련 지침에 근거하여 실습실실습의 운영을 대체할 수 있다. 실습실실습운영방안의 대체는 학과교수회의에서 결정하며 세부사항은 학과의 실습실실습지침에 따른다.

제17조(자율실습 운영) 자율실습은 정규수업 외 시간에 실습실을 개방하여 운영한다.

① 삭제 <2023.03.01.>

② 자율실습시간은 매 학기 주당 4시간 이상을 운영하고 이를 시간표에 표시한다.

③ 실습전담 프리셉터의 자격은 간호사면허소지자로 한다.

④ 실습전담 프리셉터는 실습 개방시간 중 상주하며, 학생의 자율실습 지도, 실습실 관리, 기자재 관리, 자율실습 운영일지 작성 등을 담당한다.

⑤ 삭제<2024.09.01.>

⑥ 자율실습학생은 입실과 퇴실 여부를 실습전담 프리셉터에게 보고한다.

⑦ 감염병의 대유행 및 이에 준하는 상황 등 발생시 학과교수회의의 결정에 따라 자율실습을 중단할 수 있다.

제4장 학교현장실습

제18조(교직이수자의 교육실습) ① 학교현장실습은 2학점, 4주로 운영한다.

② 교육부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 준하여 실시하되 필요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장 위원회

제19조(실습운영위원회) ① 효율적인 실습을 위하여 실습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실습운영위원회는 학과장, 실습과장, 실습과목담당 교수들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실습과장으로 정한다.

③ 실습운영위원회는 실습에 대한 제반사항 등을 논의한다.

④ 실습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간호학과교수회의에 보고한다.

제6장 기 타

제20조(실험실습비예산) ① 학과예산은 대학의 예산배정에 의거하며, 기계기구매입비와 실험실습비로 구분한다. 실험실습비는 수업에 관련된 직접경비로 사용하는 예산이며 실험실습소모품비, 현장/임상실습비, 산학협력비로 구분한다.

② 실험실습비 총액은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에 의거 예산범위 내에서 결정하되, 배정 기준은 간호학과의 경우 학생 1인당 연간 250,000원 이상을 확보한다.

제21조(실습실 및 실습기자재 관리) ① 실습실 및 실습기자재 관리 기준은 대학의 시설관리규정, 연구실안전관리규정과 물품관리규정 등에 따른다.

② 실습실 안전관리책임자는 학과장으로 하되 실습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실습실 관리를 ‘정’은 실습과장, ‘부’는 교내 실습조교로 한다.

③ 실습기자재가 반출될 경우 교내 실습조교는 해당 과목교수의 승인을 받고 반출 및 반납 대장에 기록한다. 외부 기관에 수업용 대출을 위해 반출, 또는 이동할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고 실습기자재 관련 대장에 기록하며 이동·반출한 후 기한 내에 회수한다.

④ 실습실 및 실습기자재는 교내실습 조교, 실습실 담당 교수, 실습과장이 확인하여 학기말 수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점검한다.

제22조(인권교육과 안전사고예방교육) ① 학과는 교수와 학생에게 실습실 교육 및 임상실습 교육을 위해 주기적으로 실습 관련 인권교육과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관련 지침을 따른다.

[본조신설 2023.03.01.]

제23조(개인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① 학과는 교수와 학생에게 실습실 교육 및 임상실습 과정에서 취급하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해야하며, 세부사항은 관련 지침을 따른다.

[본조신설 2026.08.01.]

부 칙

① (시행일)이 규정은 2015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 간호학과실습운영규정은 2007년 12월 12일부터 간호학과 자체 규정으로 운영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 년 4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 년 6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 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6 년 8 월 1 일부터 시행한다.